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66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이상헌・이용호・박재호

문진석 · 김기현 · 김민석

김병욱 · 김홍걸 · 신동근

송영길·윤관석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 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 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정보
-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 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정보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

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를 유원시설안 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
	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
	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u><신 설></u>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
	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
	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
	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u>야 한다.</u>

<신 설>

-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 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를 포함한다) 정보
 -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

 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정보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검사에 관한 정보
 -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

- 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정보
- 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 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 제80조제3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 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2 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업자의 안전·위생에 관한 정 보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안 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 는 검사의 결과를 유원시설안 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